

7년 끈 소송 포니택시 승소

주대법판결 김길환사장 "부담덜어 기쁘다"

서상복 기자

지난 1990년 새벽 승객을 태우고 빗길을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운전기사과 차에 타고 있던 승객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피해를 입은 승객이 포니택시사(대표 김길환)를 상대로 3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하와이주 대법원이 「포니택시사측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려 포니택시가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

당시 피해자측은 사고를 낸 운전기사의 보험회사로 부터 10만달러를 지불받고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얼마후 또다

시 피해자가 운전기사의 소속회사인 포니택시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이 문제는 택시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인등 고객들의 피해보상등의 문제와 그 한계에 대한 법률적 해석문제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상당수 한인업주들에게도 민감한 관심을 모았던 케이스였다.

이 케이스는 92년 7월에 열린 재판에서 「포니택시가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얻어내면서 포니택시측이 승소한바 있으나 피해자의 변호인측은 이문제를 93년 2월 다시 대

법원에 상고를 제기, 장기간동안 포니택시측의 부담으로 남았었다.

그런데 지난달 1월 29일 대법원은 서머리 디스포지션 오더를 통해 「포니택시측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포니택시가 손해배상 지불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김길환 포니택시 사장은 「7년 동안 장시간동안 끌어오던 사건이 피해없이 해결돼 기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 직원모두가 부담을 덜게 됐다」고 기뻐했다.

한편 포니택시측의 변호를 맡았던 방휘성변호사는 「이 케이

스는 택시운전기사나 심지어 일부 병원의 의사들까지도 고용주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자영 사업자로 분리돼 있는 경우가 허다해 이번 케이스가 이들 업주들 및 관련자들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